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설정한 권역 추가 등〉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54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설정한 권역 추가(안 제2조제7호) ...	3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추가(안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등)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4.

다. 회 부 일 : 2026.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제8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설정한 권역 추가(안 제2조제7호)

현 행	개 정 안
○ 초광역권의 정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 <신 설>	○ 초광역권의 정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

현행법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¹⁾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²⁾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1)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이에 따르면 초광역권은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설정할 수 있는데,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는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지 못해 초광역산업의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상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 >

지원 항목(관련 조문)	지원 내용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제9조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됨
초광역권산업 선정 및 육성 제14조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및 기반 확충 시책을 추진함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제30조	국가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
투자협약 및 예산 우선 지원 제31조	초광역권을 포함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해당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지역지원계정 세출 지원 제79조	초광역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초광역권산업 육성, 관련 조사·연구에 대하여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서 보조함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제85조	정부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이를 우선 반영하고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두어 우대함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초광역권의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거점 광역시가 부재하여 인접 시·도와의 연계가 물리적으로 어

려운 특별자치도가 초광역산업 육성이나 초광역특별계정 예산 지원 등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조치임.

개정안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³⁾ 기조에 맞춰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경제 엔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5극 3특 정책과 초광역권의 개념이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안과 같이 초광역권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첫째, 초광역권의 정의 확대에 따른 연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도 단독으로 초광역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9조제1항⁴⁾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3) 5극은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경북 지방을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 지역의 중부권, 전남 지역의 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말하며, 3특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함.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주체를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가 단독 초광역권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단독으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공간적 범위가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⁵⁾가 수립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⁶⁾과 일치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의 중복 및 심의 절차의 이중 수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계획 간의 통합 수립이나 연계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및 정책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별자치도가 아닌 일반 시·도 역시 인접 광역권과의 연계보다는 독자적인 거점 발전 전략을 우선시할 경우, 개정안의 사례에 근거하여 단독 초광역권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초광역권 정책의 핵심인 ‘시·도 간 연대와 협력’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의 중복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단독으로 초광역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지역지원계정 등에 포함된 초광역 협력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이는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 계정과 초광역 지원체계를 병행하여 적용받는 구조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 추가(안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구분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u>(신 설)</u>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구분 - (현행과 같음) - <u>강원·전북특별자치도 계정 신설</u>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2023. 6. 11.)와 전북특별자치도(2024. 1. 18.)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가 강원 및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법상에 이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 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 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 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 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별 특별법상의 재정 지원 원칙을 현행법상에 구체적인 계정으로 명문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5극 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추진 중⁷⁾에 있으며, 전북·강원특별자치도도 해당 계정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398호)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첫째, 별도 계정 신설 시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계정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 등 자체 수입이 세입 재원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전액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계정 역시 전액 의존재원으로 세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주세법」에 따른 주세 등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추진)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계정별 주요 세입재원 >

구분	세입재원
지역자율계정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등
지역지원계정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등

제주특별 자치도 계정	1. <u>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세종특별 자치시 계정	1. <u>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둘째, 특정 지자체를 위한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제주·세종)은 도서 지역으로서의 지리적 고립성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특수한 설립 목적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본연의 기능인 범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 배분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기존 지역자율계정에 통합 편성되던 강원·전북의 예산분이 별도 계정으로 분리·이전됨에 따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배정분과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임. 전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의 증액 없이 계정만 신설될 경우, 한정된 재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7. ----- ----- <u>발전을 위하여</u> ----- ----- <u>추진이 필요한 권역으로서</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역을 말한다.</u>
<신 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u>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u>
<신 설>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
<신 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설정한 권역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u>	제76조(계정의 구분) ----- ----- <u>제주특별자치</u>

현행	개정안
<u>계정</u>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u> 및 <u>세종특별자치시계정</u> 으로부터의 전입금 8. ~ 12. (생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u> 및 <u>세종특별자치시계정</u> 으로의 전출금 7. (생략) ③ (생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u> 및 <u>세종특별자치시계정</u> 으로부터의 전입금 7. ~ 11. (생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도계정, 강원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u>--.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강원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u>-----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강원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u>-----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강원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u>----- 7. ~ 11.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1. ~ 14. (생략)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제주특별자치도계정</u>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생략) ③·④ (생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 5. (생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생략) ③ (생략) <u><신설></u>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주특별자치도계정</u>,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 <u>전북특별자치도계정</u>-----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지역지원계정</u>,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 <u>전북특별자치도계정</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지원계정</u>,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 <u>전북특별자치도계정</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u>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u>) ① 회계의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 2. <u>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u>

현 행	개 정 안
	<u>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u>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필요한 경비</u>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 ·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3(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 과 세출) ① 회계의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 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강원특별 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 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 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 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 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 호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현행	개정안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1. (생략)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3. ~ 5. (생략)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략)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지원계정</u>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 (현행과 같음)
4. (생략)	2. ----- <u>지역지원계정</u> ,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 , <u>전북특별자치도계정</u> -----
	3. ~ 5.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u>지역지원계정</u> , <u>강원특별자치도계정</u> , <u>전북특별자치도계정</u>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u>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출예산</u>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출예산</u>,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

문 의 처
02)6788-5152